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9
----------	----

2022. 9. 28.(수)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조성태 의원 등 7인

나. 제출일자 : 2022년 9월 7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8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9월 16일

-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지윤 의원)

### 가. 제안사유

- 「혈액관리법」에서 위임한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헌혈증진 및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혈액 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명확히 규정(안 제1조)
- 조례의 목적 명확히 규정(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규정(안 제2조)
- 충청북도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신설(안 제4조)
  -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 대응, 홍보 및 헌혈 기부 문화 확산 방안 등에 관한 사항 협의
-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15명 이내로 구성(위원장: 담당국장,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위촉직)도의원,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경찰청, 의료기관, 혈액원 등
- 위원의 임기 신설(안 제6조)
- 위원장 직무, 간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제8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10조제2항, 안 제12조)

## 3. 검토보고 요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

### 가. 제출배경

- 비상시 안정적인 혈액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주민·단체·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혈액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는 조례의 개정 취지 및 개정안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개정안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른 충청북도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를 통해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목적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도민들의 조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약칭을 규정(“도지사”, “도민”)하고 있으며, 조례의 내용 및 형식적으로 타당함.
- 안 제4조는 충청북도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혈액관리법」 제4조의6은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목적을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에서 규정한 협의회의 협의사항은 협의회의 목적에 부합함.
- 안 제5조는 충청북도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혈액관리법」 제4조의6은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개정안은 위촉직 위원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경찰청, 의료기관,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관계자를 비롯하여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도민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 혈액관리법

제4조의6(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6조~제8조는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위원의 연임을 한차례로 제한한 것은 관련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민 참여 확대가 가능하며, 위원장의 직무와 간사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됨.
- 현행 조례 제8조에 규정된 시행규칙 삭제와 관련하여,
  - 조례에 별도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함이 타당함.
- 그 외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10조제2항, 안 제1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임.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혈액관리법」에서 위임한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내용적으로 타당하며, 충청북도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헌혈증진 및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혈액 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른 충청북도 헌혈추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 및 헌혈활동의 장려를 통해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 ‘도지사’ ” 를 “ “도지사” ” 로, “도민” 을 “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 으로 한다.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마다” 를 “매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다음연도” 를 “다음 연도” 로 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4조부터 제7조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충청북도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2.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3. 헌혈 관련 홍보 및 헌혈기부 문화 확산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증진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경찰청, 의료기관,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관계자

3. 보건의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도민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7조) 중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헌혈을 통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져</u> <u>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혈액관리법</u>」 제4조의6에 따른 <u>충청북도 헌혈추진협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u>과 <u>헌혈활동의 장려를 통해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충청북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u>도지사</u>’라 한다)는 <u>도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장려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2조(충청북도지사의 책무) ----- ----- “<u>도지사</u>”----- <u>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u>----- ----- -----.</p>
<p>제3조(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u>도지사는 도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u></p> <p>1. ~ 4. (생략)</p> <p>② <u>도지사는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u></p>	<p>제3조(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 ----- ----- ----- <u>매년</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u>해당</u> ----- ----- ----- <u>다음 연도</u> ----- -----.</p>

<신 설>

제4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충청북도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2.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3. 헌혈 관련 홍보 및 헌혈기부 문화 확산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증진 및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p><u>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u></li> <li>2. <u>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경찰청, 의료기관,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관계자</u></li> <li>3. <u>보건의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li> <li>4. <u>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도민</u></li> </ol>
<p><u>&lt;신 설&gt;</u></p>	<p><u>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u>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u>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u>&lt;신 설&gt;</u></p>	<p><u>제7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u>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u>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p> <p><u>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u>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u>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u>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p>

	<u>대행한다.</u>
<신 설>	<u>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u>
<u>제4조 (생 략)</u>	<u>제9조 (현행 제4조와 같음)</u>
<u>제5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생 략)</u>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u> ③ (생 략)	<u>제10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u> ② <u>제1항에 따른</u> ----- ----- <u>「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 ----- -----. ③ (현행과 같음)
<u>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도지사</u> 는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헌혈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3. (생 략)	<u>제11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u> --- ----- ----- ----- ----- 1. 3. (현행과 같음)
<u>제7조(비밀준수의 의무)</u>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u>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u> ----- ----- ----- -----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 관계법령 발췌

### □ 혈액관리법

- 제4조의6(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및 혈액수급 부족 위기 대응 등 헌혈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

###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헌혈추진협의회 운영에 따른 수당 등 지원

###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4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 조례안 제5조(협의회 구성)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2022년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참석수당  
- 산출내역

구분	합계	산출기초	비고
협의회 수당	2,600천원	- (참석수당) 13명×100천원×2회	당연직 제외

- 기본수당(2시간 이내) : 100천원
- 협의회 구성 : 15명 내외(당연직 : 보건정책국장, 보건정책과장)



나. 추 계 결 과 :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13,000천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출		2,600	2,600	2,600	2,600	2,600	13,000
협의회 수당		2,600	2,600	2,600	2,600	2,600	13,000
재원 조달		2,600	2,600	2,600	2,600	2,600	13,000
자 체 수 입	소 계	0	0	0	0	0	0
	지방세	2,600	2,600	2,600	2,600	2,600	13,000
	세외수입	0	0	0	0	0	0